# 이천시 국내 · 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2014 · 8 · 8 조례 제1051호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와 국내·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 연 및 우호협력과 이와 유사한 교류 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·외 교류 활성화 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자매결연"이란 국내·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(이하 "국내·외 도시"라 한다)간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·경제·문화·스포츠·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.
- 2. "우호협력"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국내·외 도시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교류를 통해 선린우호 관계의 확립·상호신뢰의 양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,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.
- 3. "우호교류"란 교류도시와의 문화, 사상 등 각종 분야의 협력과 교환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국내·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(이하 "자매결연 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의 선정·운영

제4조(자매결연 등의 대상)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자매결연 등

- 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·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도 시로 지정하여 교류 할 수 있다.
- ② 시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 여건 등이 유사한 국내·외 도시로 한다.
- 제5조(자매결연 등의 제의) 시장은 국내·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하는 경우 해당 국내·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.
  - 1. 면적, 인구,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
  - 2. 산업,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
  - 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  - 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
  - 5. 역사·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
  - 6.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
- 제6조(사전교류)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교류를 통해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  - 1.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, 리플렛 등의 자료 교환
  - 2. 서신 교환을 통한 바람직한 교류 방향의 모색
  - 3.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 등 지역여건 비교견학
  - 4. 주민, 경제인, 사회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사전시찰단의 상호 교환
  - 5. 그 밖에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조(의회 동의) 시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할 때에는 이천시 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8조(자매결연 등의 체결)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자매결연 등 협약식(이하 "협약식"이라 한다)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협약서에 서명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.
  - ② 자매결연 등을 위하여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항공료 등 교통비는 피 초청자가,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호 협의하여 양 도시의 장이 결정한다.

- ③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,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각각 보관한다.
- 제9조(자매결연 등 사업의 내실화)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내실화를 기하므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추진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, 협정서, 조인서,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민간교류 지원) ① 시장은 민간차원의 국내·외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 화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여비 조례」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청소년, 문화예술,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자매결연 등의 취소) 시장은 양 도시간의 교류 결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국외 도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3장 국제화추진협의회

- 제12조(협의회의 설치)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제반 시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  - 1.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  - 2.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
  - 3.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지역주재 외국기관·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

#### 이천시 국내·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

- 5.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
- 6. 국내 · 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의를 부치는 사항
- 제1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,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. 협의회의 위촉 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.
  - 1. 시의회 의원
  - 2. 지역경제 관련 유관기관장
  - 3.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, 문화・예술인, 대학교수, 관광업계 대표 등
  -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.
- 제15조(위원장의 책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6조(운영 등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 할 수 있다.
 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 류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류담당팀장이 된다.
- 제1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  - 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 - 2.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
- 3.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(협의회조정사항의 관리)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

-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자료의 제출 등)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,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,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20조(수당 등)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체결된 국내·외 도시와의 자매결 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